

소 장

원고 정강자 외 29인

상세는 [별지]와 같음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2. 이규환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3. 구은수

송달장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서울경찰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대한민국은,

가. 피고 이규환과 각자 원고 1 내지 22에게 각 금 500,000원을,

나. 피고 구은수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5. 4. 18.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추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합니다)에 참석한 시민들입니다.

피고 이규환은 현재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었습니다.

피고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서울 시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장으로서, 서울 시내 모든 경찰에 대한 지시, 명령 권한을 보유, 행사하고 있습니다.

2. 피고들의 위법행위

가. 피고 이규환의 위법행위 - 위법한 해산명령, 협박

이 사건 집회는 2015. 4. 18. 오후 4시 30분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별지 기재 원고들 중 1 내지 22는 이 사건 집회에 앞서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 건물 앞에 모여 이 사건 집회 장소인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적법한 신고를 하였음은 물론입니다[갑제1호증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증]. 행진 경로는 위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출발하여, 경복궁역 2번출구 - 횡단보도 - 서울지방경찰청 - 정부서울청사 - 광화문광장 농성천막 - 광화문역 7번 출구 - 동화면세점 - 대한문 - 횡단보도를 거쳐 서울광장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광화문 앞에서는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채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정부에 요구하며 수일째 힘겹게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격려하기 위하여 오후 3시경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 힘내세요’,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때 난데없이 백여명의 경찰병력이 정부서울청사 앞 횡단보도 맞은 편에 도열하더니,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힌 피고 이규환이 나타나 메가폰을 들고 원고들에게 해산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초 신고 내용과는 달리 집회를 하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하 경찰들에게 “(원고들의) 얼굴을 확대해서 한 명 한 명 정확히 채증하라”는 명령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라는 등의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원고들은 인도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었고, 교통방해 등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시위는 지극히 정당하

고 적법하였으므로, 피고 이규환의 원고들에 대한 해산명령은 명백히 위법합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규환은 경찰병력을 지휘, 통제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해산명령을 내리고 채증을 지시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여 원고들을 협박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이규환을 비롯하여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경찰에게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항의하였으나, 피고 이규환은 2차 해산명령, 3차 해산명령을 내리며 협박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원고들은 해산명령의 위법성과는 상관없이 당장 체포, 연행되면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항의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 서울광장으로 행진을 계속하였습니다.(이상 강제2호증의 1~3 현장 촬영 동영상)

이처럼 피고 이규환은 평화롭게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법한 해산명령을 내리는 한편 더 나아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함으로써, 원고 1 내지 22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나. 피고 구은수의 위법행위 - 불법 차벽 설치

서울광장에서는 예정대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집회가 종료되고 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농성을 하고 있는 광화문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경비병력 1만 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스센터 빌딩 등에 여섯 겹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진행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었습니다. 종로1가에서 종로를 따라 종각역 YMCA까지, 동아일보사에서부터 청계천로를 따라 삼일빌딩 앞까지, 광화문에서 을곡로를 따라 종로경찰서 입구까지 물샐틈 없이 뻗뻗하게 경찰차로 차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갑제3호증 허핑턴포스트 인터넷 기사, 갑제4호증 한겨레21 인터넷 기사 참조).

광화문으로 가려던 원고들은 청계천로를 따라 삼일빌딩 앞까지 내려가서 종로를 통과한 다음, 휴일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인사동 길을 겨우 비집고나와 안국역까지 가서 통행을 가로막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역에서 내려 광화문광장 지하통로를 통해 비로소 광화문광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서울광장→청계광장→청계로→종각→종로2,3가→인사동 거리→안국역(3호선 지하철 탑승)→종로3가역(5호선 지하철 환승)→광화문역(지하철 하차)→광화문 광장; 별지 원고들의 진행경로도 참조]. 시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을 무려 3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것입니다. 원고들의 심신은 지치고 무기력해져 극도의 육체적 피로감을 느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경찰로부터 범법자 취급을 당하여 쫓기듯 다니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추모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심각하게 멸시, 모욕당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부득이 지하철을 탑승할 수밖에 없어 지하철 승차요금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

찰의 차벽 설치에 명백히 위헌입니다(2011. 6. 30.자 2009헌마406 결정).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평온하게 행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차벽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차벽 설치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4. 18. 국민대책회의, ‘문화제’ 차벽 및 안전펜스 운용」이라는 제목의 경찰 내부 문서(갑제5호증)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지도상에 차벽의 설치 위치를 비롯하여 차벽 설치에 소요될 경비병력 인원 수, 차량과 안전펜스의 수량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원되는 경비병력은 전경 200개 이상의 부대, 차량은 477대, 안전펜스는 101개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 집회참가자들이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기로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이 계획 그대로 차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차벽이 설치되기 시작한 시간도 서울광장에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중이던 오후 3시 30분경입니다.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차벽을 설치하였다는 경찰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전혀

그리고 차벽설치를 결정하고 지시한 자는 바로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

병력의 지휘, 통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유, 행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 구은수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 구은수는 위법하게 차벽을 설치하여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명백,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 이규환, 피고 구은수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범죄행위를 자행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위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배상책임과 피고 이규환, 피고 구은수의 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 이규환, 피고 구은수의 각 행위에 대해서 원고 1인당 금 50만원이 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15. 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 철 식

담당변호사 양 규 응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